

수급권 변동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일
신고인 (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)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주소	석면피해의료수첩번호	
수급권 변동의 상세내용 등 신고내용		(필요시 별지 작성)	

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43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변동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신청안내

수급권의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